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24 - 10 - 019호 (사건번호 : 202308조사036)

안 건 명 트위치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Twitch Interactive, Inc.

대표자

주 소 350 Bush St, San Francisco, CA 94104, USA

대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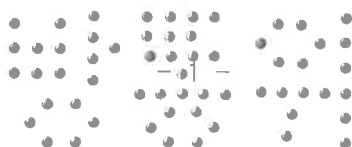
의결연월일 2024. 2. 23.

주 문

1.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방송
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가. 추후 국내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VOD 중단 조치 관련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 재개 직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금지행위 위반으로 부과된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중 국내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을 포함한 이용자 보호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한다.



- 1) 유료 재화 환불 과정 상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 2) 이용자가 민원 창구 이용 시 불편이 없도록 할 것
- 3) 스트리머의 최종 정산 금액 지급, 타 플랫폼 이전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2. 피심인은 위 1.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각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나.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3. 피심인은 위 1. 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의 온라인 'twitch.tv'(PC 웹페이지 및 모바일 웹·앱 포함)의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공포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징금액 :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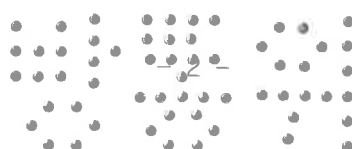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5. 피심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태료 금액 :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기초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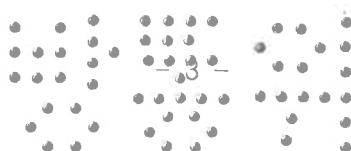
가. 피심인 일반 현황

- 1 피심인은 2006년 설립되어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14년부터 아마존의 자회사로 편입되었고, 국내 이용자들에게 라이브 스트리밍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령 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한다.
- 2 또한 피심인은 국내에 트위치코리아 유한회사(이하 '트위치코리아(유)'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2017. 12.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트위치코리아(유)의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였다. 이때 인터넷을 통해 고객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웹캐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고 신고하였고, 사실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코리아(유)가 피심인의 국내 마케팅 프로모션 및 국내 서비스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판매를 대행한다고 소명하는 등 트위치코리아(유)는 피심인의 국내 사업을 지원하였다.
- 3 피심인은 웹 사이트(<http://www.twitch.tv>)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한다)을 통해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이용자(스트리머, 시청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트 및 정기구독권 등의 디지털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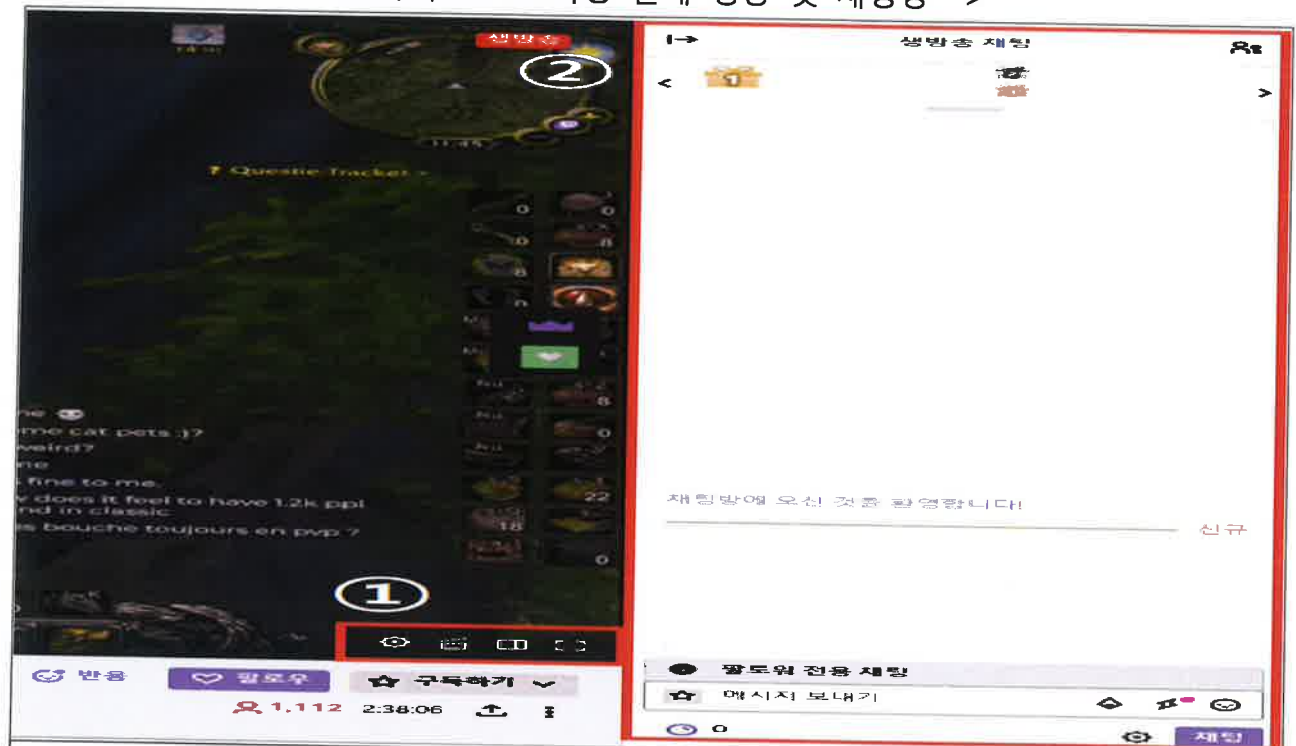
나. 피심인 제공 서비스 개요

1)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현황

- 4 이용자는 게임, 일상생활, 스포츠 중계, 음악 방송,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등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본인 채널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송출하거나 다른 스트리머의 스트리밍을 시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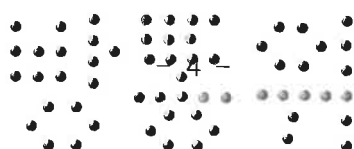
< 라이브 스트리밍 실제 영상 및 채팅창 >



-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원하는 채널을 클릭하여 시청 가능
- (화면구성) 라이브 스트리밍이 메인화면을 차지하고 화면 하단에 ① '설정 등', 화면 우측에 ② '채팅창'이 배치
- (① 설정 등) 화면 우측 하단에서 화질, 화면 크기 등을 설정할 수 있음
 -  : '설정'으로 '화질', '재생 문제 신고' 등 설정
 -  : '클립'으로 VOD의 한 유형인 '클립'을 생성
 -  : '극장모드'로 화면 크기를 바꿈
 -  : '전체화면'으로 화면 크기를 모니터 전체 크기로 설정
- (② 채팅창) 해당 채널을 시청하면서 스트리머와 시청자 간, 시청자와 시청자 간 채팅을 통해 의사소통

5 트랜스코드란, 시청자가 최적의 환경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화질을 원본과 같거나 낮게 조절할 수 있는 옵션으로 파트너 스트리머 채널에 최우선 이용 권한이 부여되고, 이 외의 스트리머(제휴 및 일반) 채널에 '실시간 트래픽과 관련된 특수한 알고리즘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6 피싱인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이후 모든 파트너 스트리머 채널은 최대 720p까지만 시청 가능하며, 제휴 및 일반 스트리머 채널도 대부분 트랜스코드가 제공되어 최대 720p까지만 시청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 스트리머 채널 별 트랜스코드 제공 여부 >

구분	일반 스트리머	트위치 제휴 (제휴 스트리머)	트위치 파트너 (파트너 스트리머)
트랜스코드	사용가능	사용가능 (우선순위 이용 권한)	트랜스코드 옵션 전체 부여
	실시간 트래픽과 관련된 특수한 알고리즘에 따라 제공		최우선 이용 권한

2) VOD 서비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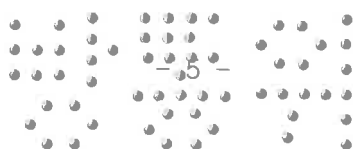
- 7 라이브 스트리밍은 송출 종료 시 더 이상 시청이 불가능한데 비해, VOD는 원하는 시간대에 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스트리머가 라이브 스트리밍과는 다른 형태의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라이브 스트리밍과는 구별되는 상이한 서비스이다.
- 8 이용자(스트리머, 시청자)는 스트리밍 영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저장·편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VOD를 생성하였고, VOD의 유형 별 생성 방법 및 생성·저장이 가능한 이용자는 다음과 같다.

< VOD 유형별 생성 방법 및 생성·저장 가능 여부>

VOD 구분	생성 방법	생성·저장 가능 여부
1. 클립	· 이용자가 생방송 또는 이전 방송의 특정 시간대의 영상을 저장(최대 1분)하여 생성	· 스트리머 생성·저장 가능 · 시청자 생성·저장 가능
2. 이전 방송	· 스트리머가 이전에 방송한 콘텐츠를 저장 * 스트리머 및 디지털 상품 구매 여부에 따라 저장일수가 다름	· 스트리머 생성·저장 가능
3. 하이라이트	· 스트리머가 저장된 방송 중 주요 장면만 편집하여 생성 ※ “지난 방송을 짧은 동영상으로 편집해 채널에 영원히 저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트위치 홈페이지)	· 스트리머 생성·저장 가능
4. 업로드된 콘텐츠	· 스트리머가 사전에 제작한 콘텐츠를 업로드	· 파트너·제휴 스트리머만 생성·저장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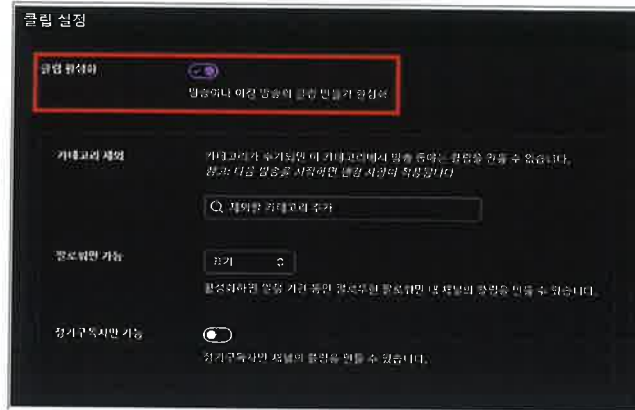
* ‘이전 방송’은 파트너 스트리머, 트위치 터보, 프라임 유저는 60일, 제휴 스트리머는 14일, 일반 스트리머는 7일 저장이 가능하였음

※ 클립, 하이라이트, 업로드된 콘텐츠는 영구 저장이 가능하였음



- 9 '클립'은, 스트리머가 피싱인 홈페이지 '비디오 프로듀서'에서 '클립 활성화'를 설정하면, 스트리머와 시청자가 라이브 스트리밍 또는 이전 방송의 일정 부분 중 최대 1분까지 생성하고 저장할 수 있었다.

< 클립 설정 화면 캡처 >



< 클립 생성 화면 캡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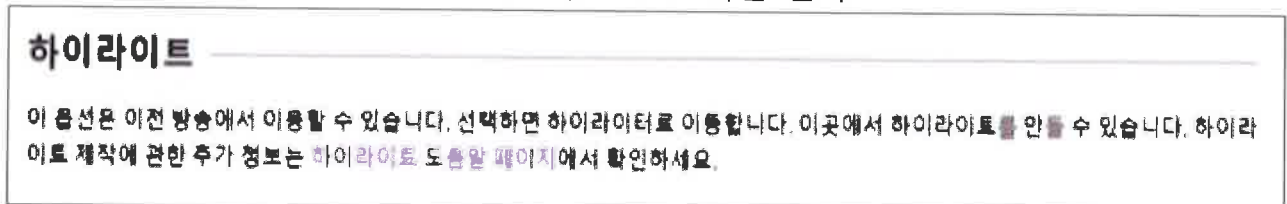
- 10 '이전 방송'은, 스트리머가 피싱인 홈페이지 '이전 생방송 저장'을 설정하면 모든 라이브 스트리밍이 자동 저장되고, 편집 등을 통해 다른 콘텐츠를 재생성할 수 있었다.

< VOD 설정 홈페이지 화면 캡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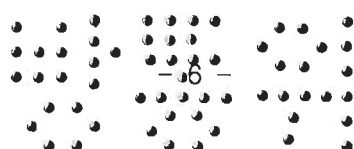


- 11 '하이라이트'는, 이전 방송 중 핵심 부분만 담을 수 있도록 짧은 동영상 형태로 편집하고 생성·저장이 가능하였다.

< 하이라이트 생성 화면 캡처 >



- 12 '업로드된 콘텐츠'는, 라이브 스트리밍 외에 스트리머가 별도로 제작한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것으로 파트너, 제휴 스트리머만 이용이 가능하였다.



2. 조사(점검)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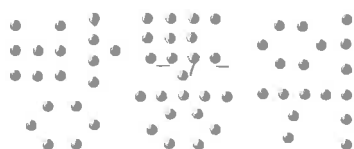
13 국내 스트리밍 최대 시청화질을 제한한다는 피심인의 발표(2022. 9. 28.) 후 이용자 피해를 우려하는 언론기사가 보도되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2022. 10. 6.), 이후 피심인이 VOD 서비스 중단을 발표(2022. 11. 9.)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우려하는 언론기사가 추가로 보도되어 검토한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가 있다고 인지하였다.

14 한편,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도록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의 계도기간이 종료(2022. 6. 9.)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2022. 7. 13.부터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관련 현장점검 실시 계획을(2022. 7. 6.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393) 통보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3. 행위 사실

15 피심인은 서비스 운영 비용 증가를 사유로 트랜스코드 제공 채널에서 국내 라이브 스트리밍 최대 시청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하향(2022. 9. 28. 홈페이지 공지, 2022. 9. 30. 시행)하였다.

16 또한 피심인은 규제 기준 충족을 사유로 국내 이용자의 VOD 시청 및 생성 중단을 홈페이지에 공지(2022. 11. 9.)하였다. 이때, 「서비스 약관」에 “대한민국 거주자들의 경우, 사전 녹화한 오디오 및 비디오 저작물의 배포와 동영상(클립, 하이라이트 및 기타 업로드 콘텐츠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과 관련된 기능 및 서비스의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여 VOD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로 기존에 생성된 모든 유형의 VOD를 2022. 12. 13.부터 시청할 수 없게 되었고, 더 나아가 모든 유형의 VOD 생성·저장 기능까지도 2023. 2. 7.자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17 한편 피심인은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 조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점검을 위해 방문한 2022. 10. 21.까지 비교식별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였고, 향후 필터링 기술 적용 시 글로벌 단위로 적용할 예정이라는 자료만을 제출하였다. 피심인은 기술적조치에 대한 계도기간이 만료된 때인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초까지 약 8개월간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2022. 12. 13. 국내이용자 VOD 시청기능을 중단하고 2023. 2. 7. 국내이용자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중단하였다.

4. 위법성 판단

가. 관련 법령

1) 금지행위 관련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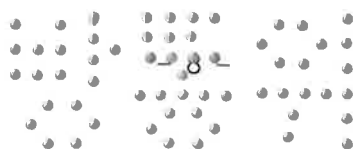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나. 이용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
- 8)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2) 기술적 조치 관련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5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2.(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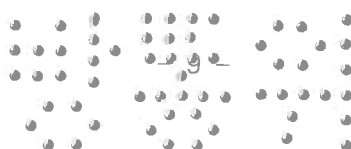
3.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나. 금지행위 관련

1) 라이브 스트리밍의 최대 시청화질을 제한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제한’ 관련

18 페이스북 사건에서 대법원은, “접속경로 변경행위로 전기통신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에 다소간의 지연이나 불편 등이 초래되거나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령 상 금지되는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이용의 시기나 방법, 범위 등에 한도나 한계를 정하여 이용을 못하게 막거나 실질적으로 그에 준하는 정도로 이용을 못하게 하여야 ‘이용의 제한’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여 ‘이용의 제한’ 관련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19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피심인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행위를 살펴본다면, 1080p가 아닌 720p로 시청할 때 만족감 혹은 편익이 일정부분 감소되지만 이는 서비스 품질을 저하한 정도에 그치며, 이용을 못하게 막거나 실질적으로 그에 준하는 정도로 이용을 못하게 하는 정도는 아니어서 '이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스트리밍이 중단된 것도 아니어서 '이용의 중단'이라고도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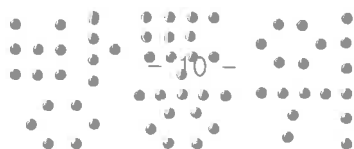
20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방식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별표4] 5-나-5)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변경' 관련

21 피심인은 이용약관 등에 따라 스트리머 및 시청자에게 라이브 스트리밍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출자료 및 홈페이지 상 이용약관·공지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스트리머 및 시청자에게 특정 시청화질(1080p)을 보장하거나 기존 화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명시적인 조항이나 조건이 없었다.

22 피심인의 이용약관인 「서비스 약관」, 「제휴 계약」, 「판매약관」 등은 피심인이 스트리머, 시청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구성한다고 인정되나, 1080p의 화질 보장이 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용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3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고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방식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별표4] 5-나-8)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VOD 서비스 중단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제한 또는 중단' 관련

(1)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중단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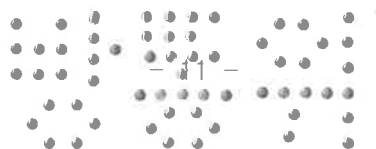
24 VOD 서비스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청할 수 있는 점, 생성 방법 등에서 라이브 스트리밍과 차이점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라이브 스트리밍과 별개의 독립적인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심인은 국내 이용자의 IP 주소를 이용하여 시청자가 지리적으로 국내에 위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이용자에 대해 VOD 서비스를 중단하여, 결과적으로 국내 이용자는 더 이상 VOD를 생성하거나 시청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심인의 VOD 서비스 중단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중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인지 여부

25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의무가 있는 사업자이나, 규제 기준 충족을 위해 VOD 시청과 생성을 중단한 것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지 않은 거의 모든 VOD 콘텐츠의 시청과 생성까지도 차단하여, 목적에 비해 과도한 수단을 선택하였다.

26 시청자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실시간으로 시청하지 못하였더라도 원하는 시간대에 VOD를 시청할 수 있었고, 스트리머는 VOD 콘텐츠 제작을 통해 자신의 채널을 홍보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이익을 VOD 콘텐츠로부터 누릴 수 있었으나 피심인의 조치로 인해 불가능해졌다.

27 또한 피심인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자 모두가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 시장에서의 VOD 서비스는 이용자(시청자, 스트리머)의 편익에 중요한 요소라고 보이며 VOD 서비스 중단행위로 이용자 편익에 저하가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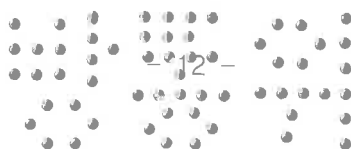
28 한편, 피심인은 아래와 같은 라이브 콘텐츠의 독점성 조항으로 인해 제휴·파트너 스트리머의 라이브 스트리밍 콘텐츠에 대해 24시간 동안 독점권을 가지는데 제휴·파트너 스트리머는 자신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VOD 콘텐츠로 재생성하여 24시간 이후 타 플랫폼에 업로드하기 위해 피심인의 VOD 저장 기능 등을 이용하였으나, VOD 기능의 중단으로 인해 별도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해야 하는 유·무형의 추가 비용이 드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29 또한 2022년 10월 기준 약 명의 유료 이용자 및 명의 무료 이용자는 VOD를 각각 시간동안 시청하였고 더 나아가 전세계 모든 VOD 콘텐츠 시청이 불가능¹⁾하게 되었는데, 한시적 중단²⁾이라고 주장한 바와 다르게 현 시점까지 피심인의 VOD 서비스 중단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이용자 이익 저해가 현저하다.

(3)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30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있는 ‘조치의무사업자³⁾’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⁴⁾에서 기술적·관리적

- 1) “한국에서 VOD 콘텐츠를 시청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한국 내 시청자가 다른 국가의 VOD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한국 내 시청자는 12월 13일부터 더 이상 VOD 콘텐츠를 시청할 수 없으며, 채널에서 VOD 콘텐츠를 검색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 내 시청자에 대한 VOD 콘텐츠 중단은 콘텐츠의 출처가 국내외 상관없이 모든 VOD 콘텐츠에 적용됩니다.”(트위치 홈페이지, VOD콘텐츠에 관한 Twitch 코리아 업데이트 및 약관 변경의 건)
- 2) 피심인 제출자료에도 한시적으로 중단하였음을 언급
-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생략)
-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3의2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②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3.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비교·식별해야 한다.
 - 가.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 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



조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은 2020. 6. 9. 신설되었고, 이후 6개월이 경과한 2020. 12. 10. 시행되었는데 규정 신설 당시 1년 이내에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었고, 2021. 12. 10. 시행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⁵⁾도 추가로 운영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피심인은 관련 규정 신설 이후 조치 의무 이행을 위한 약 2년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의 구체적인 의무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VOD 서비스 자체를 중단한 것으로 판단된다.

31 한편, 피심인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사업자(구글, 메타, 아프리카 TV, 네이버 등)는 법령상 의무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이행을 위해 자체기술을 도입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만약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이유로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법령 준수를 사유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용납하게 되는 것이며,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고 법령상 의무를 준수한 사업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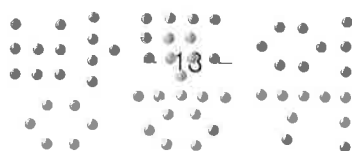
32 피심인이 2022년 6월에 제출한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2021년도 투명성 보고서’를 살펴보면 VOD 콘텐츠에 대한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를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법령 준수 의지를 피력하였으나 그로부터 머지않아(2022. 11. 9.) 피심인은 법령 준수를 사유로 VOD 서비스를 중단하여 투명성 보고서 내용과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다.

< 2021년 투명성보고서 부분 발췌 >

한편, Twitch 는 성능평가를 통과한 제3자 기술을 사용하여 VOD 콘텐츠에 대한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를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22년 6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성능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Twitch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33 이후 피심인이 2023년에 제출한 투명성 보고서에는, VOD 서비스 중단 전 까지

5)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으로 일부 대상사업자들이 `21. 12. 10.(법시행일) 전까지 서버 등 장비수급이 어려운 점, 실제 서비스 환경에 새로운 기술적 조치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점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Twitch는 모든 동영상 콘텐츠를 검토(Content Moderation)팀이 사전에 직접 검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시행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VOD 기능 자체를 중단하여 이용자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 2022년 투명성보고서 부분 발췌 >

실시간 방송 후 이들 동영상을 하는 경우 외에 동영상 자체만을 업로드 하는 경우, Twitch는 모든 동영상을 콘텐츠 검토(Content Moderation)팀이 사전에 직접 검수합니다. 이는 Twitch가 2022년 12월 13일 국내에서 동영상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 전까지 지속되었으며, 이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은 물론 당사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나 서비스 약관에 의거한 부적절한 콘텐츠는 게재될 수 없었습니다. Clip과 Highlight 등을 포함한 일체의 동영상은 2022년 12월 13일부로 더 이상 국내에서 시청이 불가하며, 2023년 2월 7일부로 동영상의 생성 기능 또한 중단될 예정입니다.

- 34 따라서 피심인이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의 사유로 상기와 같이 제시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의무 이행’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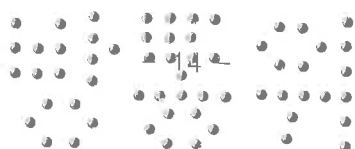
- 35 피심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고,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별표4] 5-나-5)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변경’ 관련

- (1)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36 피심인은 피심인과 스트리머 및 시청자 간 적용되는 VOD 관련한 약관을 두고 있지 않다⁶⁾고 하였으나, 서비스 약관에 VOD 서비스 중단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

6) “트위치는 VOD 콘텐츠만을 위한 스트리머 또는 구독가입자와의 계약 또는 약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제출자료)



하는 방식을 통해 VOD 서비스를 중단하였고, 피심인은 “스트리머가 미리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커뮤니티에 알려드립니다.”라며 공지사항을 게시하여 사전 통지(최소 1개월 이상 최대 약 3개월 정도)도 하였다.

37 「서비스 약관」 ‘6. 서비스 약관의 개정’ “Twitch는 본 약관의 중대한 변경에 관하여 합당한 사전 통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모든 변경은 적어도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라는 규정을 고려하였을 때, 피심인은 VOD 서비스 중단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통지하였고, 약관 변경의 효력이 최소 30일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 VOD 서비스 중단에 대비할 기간을 주었으며,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여 VOD 서비스를 중단하였다는 점에서 「서비스 약관」 제1조 “이 계약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라는 규정에 따라 VOD 서비스는 이용계약과 관련한 사항이며 VOD 서비스 중단은 「서비스 약관」에 명시한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8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와 피심인이 VOD 서비스 중단에 대해 1개월 전에 공지(화질제한은 2일전 공지)하는 등 ‘중대한 변경’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였다고 보이는 바, 이용자(스트리머, 시청자)와의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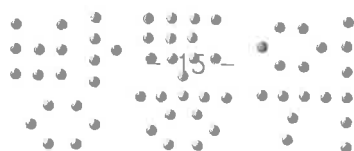
(2)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인지 여부

39 피심인이 「서비스 약관」을 변경함으로써 국내 이용자의 VOD 생성, 시청, 저장 등의 기능이 모두 중단되었고, 국내 이용자는 유·무료 여부 등과 관계없이 VOD 서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피심인의 VOD 서비스 중단에 따른 이용자의 이익 피해 범위가 넓다.

40 스트리머가 소정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피심인과 「제휴 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데, 파트너 스트리머는 60일의 ‘이전방송’ 보관 기간을, 제휴 스트리머는 14일의 ‘이전방송’ 보관 기간을 보장받는 점을 고려한다면, 스트리머는

7) Twitch 「서비스 약관」 제6조 서비스 약관의 개정 : Twitch는 수정된 약관을 게시하고 위의 “마지막 수정” 날짜를 업데이트 하여 본 서비스 약관의 약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서비스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회원님이 Twitch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된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국 사용자들에 대하여: Twitch는 본 약관의 중대한 변경에 관하여 합당한 사전 통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모든 변경은 적어도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피심인이 제공하는 VOD 서비스 기능을 충분히 인지하고 피심인과 파트너 또는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제휴 등급 이상의 스트리머 계약을 맺은 자는 2022년 10월 약), ‘트위치 터보’, ‘아마존 프라임’, ‘프라임 비디오’, ‘프라임 게이밍’에 가입한 시청자는 기존과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VOD 기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41 이와 같이 제휴 등급 이상의 스트리머 계약을 맺은 스트리머나 유료 디지털 상품 가입자는 VOD 시청, 생성, 저장 등의 서비스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크고, 2015년 국내 서비스 시작 때부터 제공되었던 VOD 서비스가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를 가졌을 가능성도 높는데, VOD 중단 조치라는 일방적인 계약변경으로 인해 모든 유형의 VOD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42 한편, 파트너와 제휴 스트리머는 피심인 외 아프리카TV, 유튜브 등 유사 플랫폼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동시에 방송(동시송출)할 수 없으며, 피심인 「제휴 계약」 2.2.(라이브 콘텐츠의 독점성⁸⁾)에 따라 피심인이 라이브 콘텐츠에 대해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24시간) 영상을 다른 플랫폼에 방송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제휴·파트너 스트리머는 자신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VOD 콘텐츠로 재생성하여 24시간 이후 타 플랫폼에 업로드하기 위해 피심인의 VOD 저장 기능 등을 이용하였으나, VOD 기능의 중단으로 인해 별도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해야 하는 유·무형의 추가 비용이 드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43 또한 2022년 10월 기준 약 명의 유료 이용자 및 명의 무료 이용자는 VOD를 각각 시간동안 시청하였고 더 나아가 전세계 모든 VOD 콘텐츠 시청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피심인이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여 이용자와의 계약을 변경한 후 한시적 중단⁹⁾이라고 주장한 바와 다르게 현 시점까지 피심인의 VOD 서비스 중단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이용자 이익 저해가 현저하다고 보인다.

8) 트위치는 모든 라이브 트위치 콘텐츠에 대하여 당해 라이브 Twitch 콘텐츠의 최초 방송 시점부터 그 최초 방송 종료 후 24시간의 기간(“독점기간”)동안 계속하여 독점합니다(이는 귀하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 피심인 제출자료에도 한시적으로 중단하였음을 언급

(3)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44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서 검토한 것과 동일하게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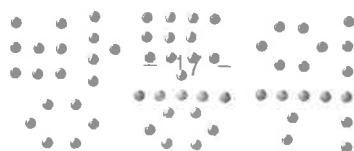
(4) 소결

45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고,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별표4] 5-나-8)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기술적 조치 미이행 관련

46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7 피심인은 점검시점 기준(2022. 10. 21.)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나, 계도기간이 만료된 2022년 6월부터 국내 이용자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중단한 2023년 2월초까지 약 8개월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2항 제3호의 사전비교식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5. 피심인 주요 의견 및 검토 결과

가. 금지행위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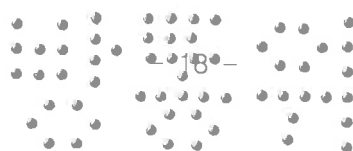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제한 또는 중단' 관련

48 피심인은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VOD는 서비스 제공 방식이나 일부 기능에 해당할 뿐 독립적인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니므로 VOD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49 그러나 라이브 스트리밍은 송출이 종료되면 더 이상 시청이 불가능한데 비해, VOD는 시청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스트리머가 라이브 스트리밍과는 별개의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VOD 서비스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이므로 라이브 스트리밍과 별개의 전기통신서비스인 VOD 서비스의 중단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 의견은 수용할 수 없다.

50 또한 피심인은 VOD의 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이용자는 부수적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며 VOD 중단으로 인해 이용자 수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VOD의 시청시간이 객관적으로 작지 않고, VOD는 부수적인 기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유료이용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요금 하에 중요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VOD 서비스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였다고 판단된다.

51 한편 피심인은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VOD 기능을 중단한 것이고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사업적 결정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의견이나, 검토 결과 기술적인 조치 등의 적용을 통해 법령을 준수하면서 VOD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2년 여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계도 기간 종료 후 8개월 동안 VOD 서비스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점을 고려한다면 피심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변경' 관련

52 피심인은 VOD 중단은 부수적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이용자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용자 수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53 그러나 유료이용자 및 제휴 등급 이상의 스트리머는 기존과 동일한 구독료 등 동일한 계약조건 하에서, 부수적인 서비스라고 볼 수 없는 VOD 서비스가 중단되어 서비스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이는 명백한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며, VOD 중단 조치가 이용자 수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이 아니므로, 이용자 수에 변동이 없다는 사실 등으로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의 변경이 아니라는 피심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나. 기술적 조치 관련

54 피심인은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는 않았으나, 업계 선도적인 콘텐츠 조정 기술을 적용하여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고, 이는 피심인의 서비스에 맞춤 적용된 기술로서 본 건 조치가 의도하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결과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현장점검에서 적발 후 VOD기능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 건 과태료 부과는 기술적 조치 계도기간 종료 후인 2022. 6. 10. 부터 VOD 기능을 완전히 중단한 2023. 2. 7.까지 피심인이 기술적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처분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처분

가. 금지행위 관련

1) 시정조치 명령

가)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55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1) 추후 국내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VOD 중단 조치 관련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 재개 직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2) 금지행위 위반으로 부과된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중 국내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을 포함한 이용자 보호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한다.

(가) 유료 재화 환불 과정 상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나) 이용자가 민원 창구 이용 시 불편이 없도록 할 것

(다) 스트리머의 최종 정산 금액 지급, 타 플랫폼 이전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나) 시정명령 이행계획서의 제출

56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 가) 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정명령 이행 결과의 보고

57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 58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위 가)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 온라인 'Twitch.tv'(PC 웹페이지 및 모바일 웹·앱 포함)의 첫 화면(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 크기의 팝업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4일 동안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공표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회사)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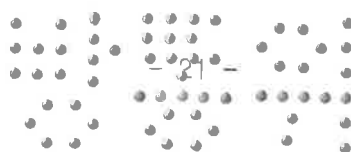
저희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로 인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회사) ○○○

2) 과징금 부과

- 59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2-3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별표4] 5-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별표4] 5-나-8) 위반행위(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한 행위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60 피심인은 감사를 거치지 않은 국내 추정 매출액만을 제출한 바, 객관성이 없고 위반행위와 제출한 매출액 사이의 관련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61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는 10억 원을 상한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2-3호)에서는 8억 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기준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액	고려 사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6억 원 ~ 8억 원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피해규모의 광범위,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원 ~ 6억 원	시장의 단기적 왜곡, 피해가 중대하지만 광범위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3억 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피해의 경미, 이용자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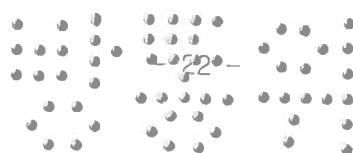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2-3호) 제4조제2항 [별표2]

62 피심인의 행위는 광범위한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피해의 범위가 넓으나,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유료상품 환불 요청 시 조건 없이 환불한 점, 위반행위의 기간이 1년을 약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성 정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그 기준금액을 원으로 산정한다.

63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12개월을 초과하여 기준금액의 30%를 가산하고, 동일 위반행위로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 기준금액의 10%를 감경한다.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7조 제1항 [별표3] : ① 위반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②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 종료일 기준 최근 3년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64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적 가중·감경이 가능하고, 조사 개시 후에도 시정하지 않았으므로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에 10%를 가중한다.



기준 금액	가중·감경	최종 액수
원	-	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11] 과태료의 부과기준 ('24. 1. 9. 개정)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자의 사업종류 및 규모,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 이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사. 법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 제1항제3호	1,500	3,000	5,000

7. 결 론

70 위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내지 제53조 및 제10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 71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정한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72 피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73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2월 23일

위원장 김 홍 일



부위원장 이 상 인

